

상담대학원 전공임상프로젝트 시행내규

제1조 (목적)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20조(이수학점) 및 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의거 프로젝트(Project)의 작성, 제출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지도교수 배정) ① 지도교수의 배정은 상담대학원위원회에서 배정한다.

② 지도교수는 본 대학원(대학교)의 전공교수 중에서 배정한다.

제3조 (프로젝트 내용) 프로젝트는 현재 전공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아래와 같이 연구한다.

① 이론적인 것보다 실제적인 주제를 가지고 논증한다.

② 현장중심의 경험적인 내용을 학문화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.

③ 이론적 내용을 현실로 적용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계획을 내포한다.

제4조 (프로젝트 제출자격) ① 5학기이상 정규등록하고

② 전공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

제5조 (프로젝트 작성) ① 프로젝트는 국문으로 작성하며 한문이나 영어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 ()속에 묶고,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 허락을 얻어야 한다.

② 용지의 크기는 A4용지로 하며 프로젝트의 분량은 30매에서 60매 이내로 한다.

③ 프로젝트는 횡서로 작성한다.

④ 각주는 본문하단에 기재하고 각주 번호는 각 장별로 한다.

⑤ 참고문헌 목록은 국문은 가나다순으로, 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한다.

⑥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내규를 참고한다.

제6조 (개정) 내규는 상담대학원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.

부 칙

① (시행일자) 내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